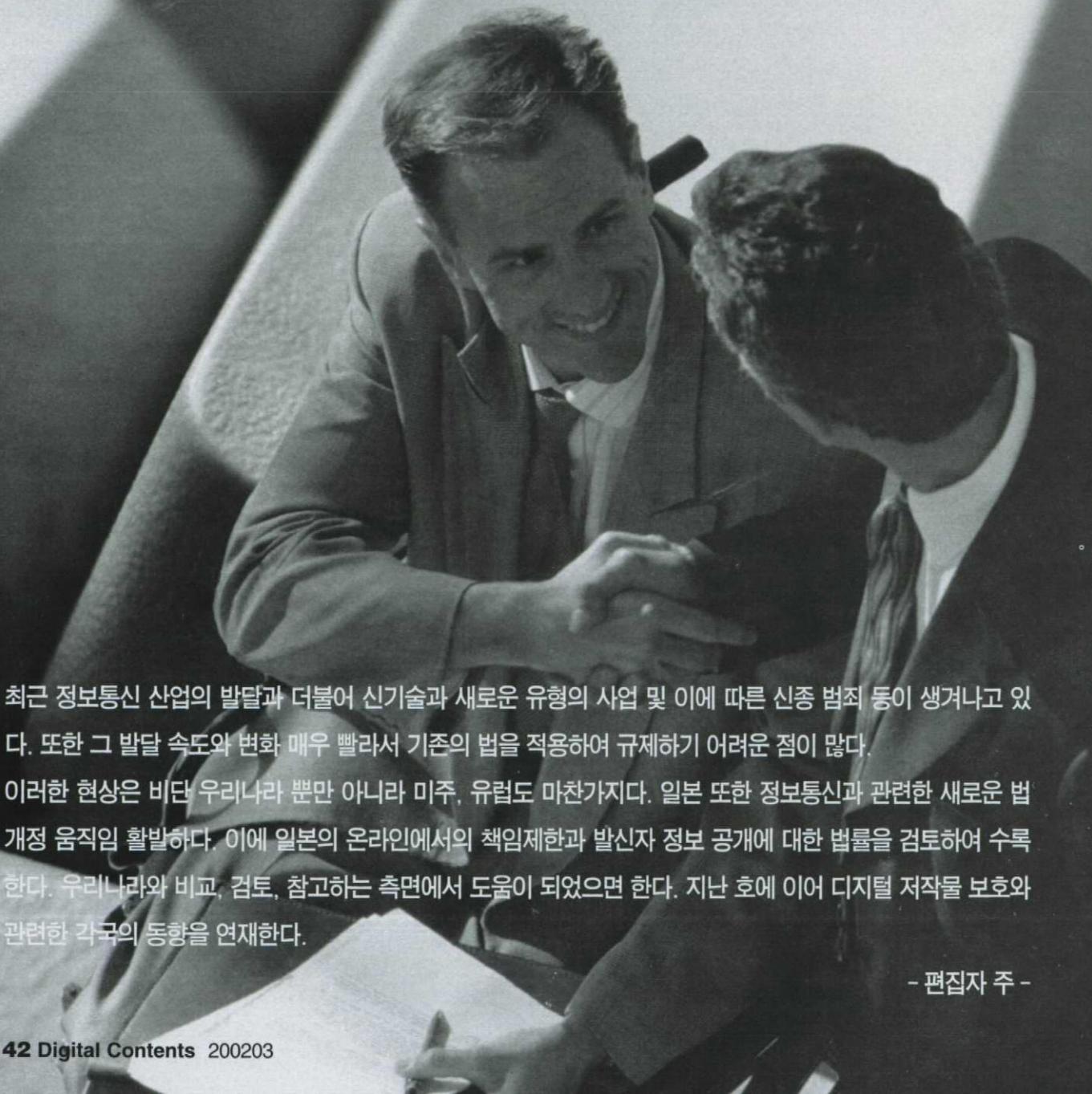


디지털 저작물 보호 위해 각국 법 개정 움직임 활발

저작물 보호기술도 함께 발전

글 / 최경진 법무법인 로서브 선임연구원



최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신기술과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이에 따른 신종 범죄 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그 발달 속도와 변화 매우 빨라서 기존의 법을 적용하여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도 마찬가지다. 일본 또한 정보통신과 관련한 새로운 법 개정 움직임 활발하다. 이에 일본의 온라인에서의 책임제한과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여 수록 한다.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 참고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 호에 이어 디지털 저작물 보호와 관련한 각국의 동향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1. 프롤로그

전자적 저작물을 비롯한 디지털 정보의 생성자·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써 기술적 보호조치가 개발·이용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일정한 법적 보호를 주어야 한다는 요청이 증가하였고, 세계 각국은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의 반대편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법으로써 보호함으로써 정보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데 상당부분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적인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입법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동향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하고 있다.

2) 접근통제

접근통제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인증없이 접근하는 사람이나 접속을 금지하는 기법을 말한다. 즉,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에의 접근과정에서 인증이라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는 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정보자체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는 암호화방법과는 달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접근까지 제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통제는 다양한 해킹수단에 의하여 무력화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디지털 워터마크

정보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면서 정보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정보에 대한 권리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었으며, 그 예가 바로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이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디지털 저작물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임을 표시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삽입되는 전자적인 표식(標識)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또는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이용·보호되고 있으나, 기술기반이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기술이 변화·진보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할 수 있으며, 파훼되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가 강조되면, 정보의 활용범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정보의 유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기술적인 측면, 활용·유통 측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이해

정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고성능 복제장치가 널리 유통되기 시작했으며, 일반인도 품질이 좋은 복제물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의 유통시 정보의 적정가격을 훨씬 밀도는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정보가 유통되게 되어 권리자 또는 사업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단복제 및 배포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겨날 것이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는 암호화기법, 접근통제, 디지털 워터마크 등이 있다.

1) 암호화방법

암호화는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며, 정보보안을 위한 기초기술이다. 암호화란 일정한 정보를 타인이 인식할 수 없도록 암호화된 정보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암호화방법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복잡하고 고속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진보되고 있으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기술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발전

3. 국제적인 입법동향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저작권을 보

호할 수 있기 때문에, 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서는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자가 이용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로서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제11조)”고 규정하여 복제방지장치나 전송방지장치 등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행위를 규제하도록 하였다. 다만, 보호의 대상, 규제대상 및 구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각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2) 미국

디지털환경에 맞는 저작권법의 변화를 모색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은 WIPO 저작권조약의 규정을 많은 부분 입법화하고 있는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저작권자의 국제적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기술조치의 보호범위에 접근통제에 대한 기술조치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즉, 기술조치 보호규정은 크게 접근통제의 보호와 복제통제의 보호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으며, 제1201조 (a)(1)은 접근통제를 회피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a)(2)는 접근통제를 회피하는 장치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201조 (b)(1)은 복제통제등 저작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부품 등을 생산, 수입, 제공, 공중에의 청약, 제공, 기타 유통(manufacture, import, offer to the public, provide, or otherwise traffic in any technology, product, service, device, component)’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DMCA에 의하여 규율되는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의 회피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디스크램블, 암호해제 기타 기술적 조치를 회피, 우회, 제거, 무력화, 손상(des scramble a scrambled work, to decrypt an encrypted work, or otherwise to avoid, bypass, remove, deactivate, or impair a technological measure, without the authority of the copyright owner)”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홀링스(Fritz Hollings)의원이 제안한 DMCA 강

화 법안인 「보안시스템표준및인증법」(SSSCA:Security Systems Standards and Certification Act)(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컴퓨터업체는 물론 가전업체에까지 제품 출시 전부터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사용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증된 보안 기술을 채택하지 않은 양방향 디지털기기(저장, 복구, 제조, 전송, 디지털 형태의 것을 수신하거나 복제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제조, 판매, 배포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벌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외에 디지털 저작물의 코드를 해체하거나 무력화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 유럽연합(EU)

EU는 2001년 5월에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분야의 통일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을 채택함으로써 EU 회원국들이 WIPO 저작권조약을 비준 및 가입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침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s)는 “통상적인 운영 절차에 따라 법에 규정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지침(Directive 96/9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상의 특수한 권리에 대한 침해를 예방 또는 금지하고자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이 지침은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권한 없이 허용하거나 조장한 사실을 알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피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회피목적으로 조장·광고·유통된 경우, 회피 이외에 다른 주요한 목적이나 용도가 상업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회피를 가능하게 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주로 고안·제조·개조·수행된 경우에는 그러한 장치의 제조·배포나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권한 없는 행위도 금지된다.

4) 일본

- 저작권법(著作権法)

디지털정보에 있어서의 저작권자 보호를 위하여 저작물·정보에 대한 일정한 보호조치를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1999년에 저작권법(著作權法, 1999年 6月 23日 公布)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수단에 대한 보호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술적 보호수단은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하고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에 의하고, 저작자인격권 또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행위의 방지 또는 억제를 위한 수단(저작권등을 갖는자의 의사에 근거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제외)으로서, 저작물, 실연, 레코드,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하였다면 저작자인격권의 침해로 되는 것이 당연한 행위를 포함) 시에 이것에 사용된 기기가 특정한 반응을 한 신호를 저작물, 실연, 레코드 또는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관계된 음 또는 영상과 동시에 기록 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제2조 제1항 제20호)을 말한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수단과 관련하여 일본 저작권법은 ① 기술적 보호 수단의 회피만을 위한 기능을 가진 장치 또는 기술적 보호 수단의 회피만을 위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공중에 양도, 대여하거나 공중에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소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또는 해

당 프로그램을 공중 송신하거나 송신 가능화한 자와 ② 기업으로서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기술적 보호 수단의 회피를 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0조의 2).

●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써 디지털정보의 복제금지장치 등의 기술적 제한수단의 무효화에 관한 금지규정을 추가하였다.

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술적 제한수단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영상 또는 소리의 시청 또는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 음 또는 프로그램의 기록을 제한한 수단으로서, 시청 등 기기가 특정한 반응을 한 신호를 영상, 음 또는 프로그램과 동시에 기록 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한 방식 또는 시청 등 기기가 특정한 변환을 필요로 하도록 영상, 음 또는 프로그램을 변환하여 기록 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한 방식에 의한 것”(제2조 제5항)을 말한다.

이러한 기술적 제한수단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상 사용되고 있는 기술적 제한 수단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영상·소리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 영상·음·프로그램의 기록에 있어서 해당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효과를 방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만을 갖는 장치(해당 장치를 편입한 기기를



포함) 또는 해당 기능만을 갖는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조합한 것을 포함한다)을 기록한 기록 매체 또는 기억한 기기를 양도, 인도, 양도·인도를 위한 전시·수출·수입 또는 해당 기능만을 갖는 프로그램을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제공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써 금지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0호).

5) 우리나라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001년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하 '디지털콘텐츠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및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다. 즉,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제18조 제1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행위의 중지·예방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제1항).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22조 제1항).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권한 없이 위의 금지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수입·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는 2001년 개정



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3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일정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동일성 유지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제12조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동조 제2항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법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입법예고된 저작권법은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와 저작물이용조건 등 권리처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정의규정과 기술조치의 무력화를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및 그 주요부품의 제공·제조·양도·대여·전송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제92조의2)을 신설하고, 이를 업으로서 또는 영리목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제99조).

특히 기술조치 무력화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저작권 보호제도의 근저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친고죄 규정을 배제(제102조)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점이다. 여기에서 기술조치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인 조치

(제2조 제20호)”를 말하며,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및 편집물의 저작자나 이용조건 등에 관한 정보로서 그 정보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편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제2조제21호)”을 말한다.

또한 권리관리정보의 개변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의제하여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하였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제92조),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9조 제5호).

4. 에필로그

인터넷의 보편화로 음악·영화 등 저작물 이용이 매우 간편해졌으나 무단복제의 용이·균질성 및 복제물 전파의 신속·광범위 등 디지털 환경의 권리보호 취약성으로 인해 저작물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이 위축되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디지털콘텐츠 무단복제 방지장치와 권리처리를 위한 정보 등 저작권 보호기술이 개발·이용되고 있으나 이의 무력화를 위한 기술도 같은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경우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사실상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저작물 및 저작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서 WIPO를 비롯한 미국·일본·EU 등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활용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정보에 대한 일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규율을 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다만, 무조건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오히려 정보에 대한 통제권한을 모두 권리자 측에 두게 되므로,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보의 공정한 이용이나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